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87

발의연월일: 2024. 9. 19.

발 의 자:서왕진·김정호·이해민

조 국 · 정춘생 · 김재원

차규근 • 신장식 • 김준형

박은정 · 강경숙 · 김선민

한창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발전전력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의 우선 구매규정에 따라 자신의 발전전력을 해당 시점의 전력가격으로 전력시장에 전부 판매할 수 있음. 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에따라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전력공급이나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그에 대비할 사전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경영상의 손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그 지시의 기준 및 사유 등을 문서로 알려주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49조 등).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중 "발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빅데이터 기반 예측체계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45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된 지시를 하는 경우 사전 고지 시 지시의 기준, 조치 기간, 구체적 사유 등을 안내하고, 사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한 신·재생에 너지 발전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 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5조제4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 상하는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전력거래) ① ~ ③ (생	제31조(전력거래)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	
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	
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3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	
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u>발전</u>	<u>발전사업</u>
<u>사업자</u>	<u>자(이하 "신·재생에너지 발</u>
	전사업자"라 한다)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생략)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	

시를 할 수 있다. <u>이 경우 변경</u> 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 지시는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빅데이터 기반 예측체계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된 지시를 하는 경우 사전 고지 시 지시의 기준, 조치 기간, 구체적 사유 등을 안내하고, 사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를 문서(「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한 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손실 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 을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u>⑥</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제49조(기금의 사용) -----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다.

1. (생략)

<u><신 설></u>

2. ~ 12. (생략)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5조제4항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 실을 보상하는 사업

2. ~ 12. (현행과 같음)